



우리나라 고령농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강성호 연구위원

고령화와 함께 농가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농가소득 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이 도입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현재 농가의 고령화율은 전체 가구의 3배 이상이고 농가와 비농가의 소득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농가의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됨. 농가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는 고령자가 많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의 소득이 적다는 점 외에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도시와 농촌 지역 노인가구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고령농가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와 함께 농가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공적노후소득보장 외에 농지연금¹⁾이 도입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 고령농가²⁾의 빈곤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노후소득보장³⁾은 재정적 한계로 추가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고령농가의 소득 개선을 위해 농지연금⁴⁾이 도입(2011년)되었으나, 가입률은 1.36%에 그쳐 농지연금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농지연금 월수급액⁵⁾은 2016년 신규가입자 기준 약 100만 원⁶⁾ 수준으로, 가입 시 노후소득은

1)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소유면적 3만㎡ 이하)이 소유농지(전, 답, 과수원)를 종신형이나 기간형의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 이때 담보물은 가입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되, 지급액은 월 3백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며 2011년부터 시행함(농지연금포탈 농지연금 바로알기 참조)

2)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3) 현재 국민연금 농어민 지원액은 1인당 월 기준 최고 40,950원이며, 기초연금은 저소득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월 기준 약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약칭: 농어촌공사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5) 농지연금모형은 수급자 개개인의 기대여명을 예측하여, 수급자가 납입하는 위험부담비용 총액과 약정 해지 시 회수 불가능한 농지연금채권 총액이 일치하도록 월지급금을 산정(농지연금포탈/자주 찾는 질문)

6) 한국농어촌 공사 보도자료(2017. 1. 26), 농지연금과 함께 행복한 설날 되세요!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전체 55만 가구⁷⁾ 중 7,488가구(2017년 3월)⁸⁾만 가입하여 가입률은 1.36%에 그침

■ **현재 농가의 고령화율은 전체 가구의 3배 이상이고 농가와 비농가의 소득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농가의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됨**

- 2016년 농가의 고령화율⁹⁾은 40.3%(101만 명)로, 이는 전체 가구의 고령화율 13.2%(676명)의 3배 이상임¹⁰⁾
- 2015년 기준 전체 노인빈곤율 44.7%¹¹⁾와 비교할 때, 농가의 고령화율이 높고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은 고령도시가구¹²⁾ 소득의 40.4% 수준¹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농가의 빈곤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농가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고령농가가 많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의 소득이 적다는 점 외에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농가의 특성상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고, 또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제도¹⁴⁾도 늦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세대 고령농가¹⁵⁾의 연금 수혜 가능성은 낮음

■ **따라서 도시와 농촌 지역 노인가구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고령농가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이 없는 저소득 고령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위험부담금¹⁶⁾요율 감액(혹은 면제)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7) 통계청 홈페이지(농림어업총조사, 경지규모별 농가 및 경지면적) 참조

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4. 3), 농지연금, 가입건수 역대 최고, 올해가 가입적기'

9)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

10)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4),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11) 가처분소득을 활용한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기준으로 산출됨(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빈곤통계연보)

12) 도시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13)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은 고령도시가구 소득과 비교할 때 2010년 43.4%, 2011년 40.4%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농어촌연구원(2015), 농지은행을 둘러싼 환경변화/왜 우리는 변해야만 하나?, RRI 포커스 제41호).

14)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에 도입된 시점은 1995년 7월부터이고, 적격 개인연금 도입은 1994년부터여서 현 농가 경영주 연령을 고려할 때 수급자 수는 매우 적을 것임

15) 전체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6.3세이고, 이 중 70세 이상 농업인이 39.4%로 가장 많음(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4),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16) 수급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미래의 손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립하는 일종의 보험료임

- 농지연금 급여액 산정 시 실거래가¹⁷⁾로 적용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¹⁸⁾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무엇보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에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현세대의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 보다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향후 국민연금이 성숙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 **kiri**

17) 현재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의 80%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른 급여액 과소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18)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농지연금(주택연금 포함)은 수급액의 50%를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선정 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